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기획예산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재정법 제53조제6항 신설에 따라 동 조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정책펀드의 범위 설정(안 제54조)

법 제53조제6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하되, 재정당국 및 국회의 관리·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 기관 합의 중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(정책펀드의 범위)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정책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펀드를 말한다.

1. 국가가 직접 출자·출연한 예산 또는 국가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출자·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·운용되는 펀드일 것
2. 다른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모펀드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펀드일 것
3. 자펀드 청산에 따라 발생한 회수재원을 해당 펀드의 존속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일 것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4조(정책펀드의 범위)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정책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펀드를 말한다.</u> <u>1. 국가가 직접 출자·출연한 예산 또는 국가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출자·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·운용되는 펀드일 것</u> <u>2. 다른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모펀드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펀드일 것</u> <u>3. 자펀드 청산에 따라 발생한 회수재원을 해당 펀드의 존속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일 것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	
연 락 처	(044) 214 - 2736